

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10. 24.(금)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28호
- 제출 일: 2025년 10월 2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6일

2. 제안사유

○ 문화회관의 사무 위탁에 대해 위탁기간, 조건, 재계약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 제한 사유와 허가 취소 요건, 대관료 환불 체계를 구체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관리·운영 및 사무위탁(안 제5조)
- 시설의 사용제한(안 제6조)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반환·감면(안 제7조 ~ 제9조)
- 시설의 허가취소 등(안 제10조)

4.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의 사무 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 제한 사유와 허가 취소 요건, 대관료 환불 체계를 구체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조건, 재계약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시설의 사용 제한과 사용료를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제8조는 사용료 반환 시에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구분없이 사용예정일 기준 1일당 10%씩 90퍼센트까지 반환하거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게 이용객의 권익에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12. 27., 일부개정] <별표Ⅱ> 품목별해결기준 10번목<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잔여 횟수(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이용객의 권리를 신장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위법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